



제 426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07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동물전시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현승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24.

다. 회 부 일 : 2025. 3.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동물전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 시설 및 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사육·관리·보호하는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실내동물원 업체들이 또다른 동물 착취형 산업으로서 반려동물 카페를 개장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동물전시업에 대하여 동물의 관리나 보호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전시업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영업장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며,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6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동물전시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개정안은 동물전시업자가 보유동물의 관리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6항 및 안 제97조제4항제7호의2~제7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⑤ (생략) <u><신설></u>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동물전시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u>1. 동물전시업자는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u> <u>2. 동물전시업자는 보유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u> <u>3. 동물전시업자는 보유동물이 영업장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u>	<u>⑦ -----제6항-----</u> -----

현행	개정안
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 ----- -----.
제97조(벌칙) ① ~ ③ (생략)	제9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7의2. 제78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킨 동물을 보유한 영업자
<신설>	7의3. 제7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전시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지 아니한 영업자
<신설>	7의4. 제78조제6항제3호를 위반하여 영업장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킨 동물을 보유한 영업자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동물전시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장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¹⁾

영업자와 종사자로 하여금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²⁾

그러나 2023년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

1) 「동물보호법」 제73조(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동물전시업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생 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2. 개별 기준

가. 동물전시업

1)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전시되는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2) 「동물보호법」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것

2. ~ 11. (생 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영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 준수사항

나.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해야 한다.

2. 개별 기준

마. 동물전시업자

1)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월령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대상 동물인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2) 전시된 동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하고, 매년 1회 검진을 해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격리한 후 수의사의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3)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관리해야 한다.

4) 영업시간 중에도 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전시하는 동물은 하루 10시간 이내로 전시해야 하며, 10시간이 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6) 동물의 휴식 시에는 몸을 숨기거나 운동이 가능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7)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8) 전시하는 동물의 배설물은 영업장과 동물의 위생 관리, 청결 유지를 위해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

9) 전시하는 동물을 생산이나 판매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생동물³⁾의 전시가 제한되어⁴⁾ 실내동물원 업체들이 반려동물 카페 등으로 전업하는 상황에서,⁵⁾ 동물전시업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⁶⁾

이에 개정안은 동물전시업자가 보유동물의 관리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①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② 보유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 ③ 동물전시업자는 보유동물이 영업장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물전시업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공중안전 제고 및 생태계 교란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2. 학술 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2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② (생략)

5) 반려동물전시업 현황: ('18) 394개소→('21) 653→('23) 541 →('25.3.) 599 (+58개소)
(출처 : 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복지실태조사 농림축산검역본부)

6) 네이트뉴스,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동물 학대 카페’ 된 동물 카페”, 2023. 5. 27.

URL: <https://news.nate.com/view/20230527n05932>

방지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유사입법례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유동물의 안전관리, 질병관리 및 생태계교란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⁷⁾

다만, 개정안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수족관의 준수사항과 유사한 내용의 규제를 동물전시업자에 제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동물전시업과 동물원·수족관은 규모와 보유동물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둘째, 개정안에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도록 관리” 등의 불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위반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질병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18조(생태계교란 방지)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안전관리, 질병관리 및 생태계교란 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허가권자로 하여금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5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미이행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또한 각 의무별 위반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① 안전관리 의무: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되, 그럴 우려가 있거나 위해를 일으킨 경우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미통보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질병관리 의무: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며,(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결과 질병이 확인된 경우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미통보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생태계교란 방지: 보유동물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되, 그럴 우려가 있거나 교란시킨 경우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미통보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⁹⁾

셋째, 개정안은 동물전시업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동물전시업의 전시동물인 반려동물(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¹⁰⁾은 생태계교란 종(생물다양성법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환경부 고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시동물의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 및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동물원·수족관의 준수사항과 동일하게 동물전시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전시업과 동물원·수족관은 그 규모 및 보유 동물의 종류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동물전시업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 및 벌칙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¹¹⁾

9) 유사 입법례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질병관리 의무 부과 시 정기검사가 필요한 대상 중, 검사항목,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화하고 있음.

1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등록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11) 동물원은 야생동물, 가축(반려동물 제외)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이며 허가영업임. 반면, 동물전시업은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이며 등록영업임.

문 의 처
02)6788-5424